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권침해·차별행위 인권위원 신분 미보장〉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01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장식 · 김준형 · 차규근 · 김선민 · 서왕진 · 민병덕
김재원 · 이해민 · 이성윤 · 이기현 · 윤준병 · 이수진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5. 1. 17.

3. 회 부 일 : 2025. 1. 20.

※ 의안번호 : 76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등이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문제되어 면직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하여 해임 요청 사유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권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8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① -----다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u> <u>----- . <단서 삭제></u> <u>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u> <u>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u> <u>3.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u> <u>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u>

현 행	개 정 안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¹⁾는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과 운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되, 인권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인권위원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다양성·다원성이 확보되고 인권에 관한 전문성·감수성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그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최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인권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우려되는 행위를 함에도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을 보장받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전문성·감수성을 갖춘 인권위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